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312
----------	------

2013년 7월 4일
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3. 4. 16. 이행자 의원 대표발의
- 나. 회부일자 : 2013. 4. 18.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
(2013. 7. 4 상정)

2. 제안설명

(제안설명자 : 이행자 의원)

제안이유

-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대상 기준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재무 관리 전문가까지로 확대·다변화하고, 다각적인 시각에서 결산자료를 검토·분석할 수 있도록 특정분야 위원의 수를 제한하는 등 현행 결산 검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1)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, 분야별 검사위원의 비율이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(안 제3조제2항).
- 2) 결산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,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2항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(수석전문위원 : 박 노 수)

□ 검토요지

가.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서울시 결산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·운영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,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며,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 제안되었음.

나.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검토(안 제3조제2항)

- 개정안 제3조제2항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자격요건 중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신설하는 것으로,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각적인 시각에서 결산자료를 검토·분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 다만, 시민사회단체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며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재무관리 전문가의 자격요건이 현행 제3조제2항의 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하는 검사위원의 자격요건과 중복될 우려와 함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.
- 개정안 제3조제2항의 단서를 신설하여,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위원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결산검사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하여 결산자료를 다각적으로 검토·분석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, 같은 조제3조제1항¹⁾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의 결산검사위원 추천권을 다소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임.

다. 검사위원의 신분상실에 대한 검토(안 제5조제2항)

- 개정안 제5조제2항 제2호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신분상실 사유 중 검사위원의 직무 거부, 직무 유기, 직무 태만을 신설하는 것으로, 결산검사위원이 성실한 검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장치가 될 것으로 판단됨.

1) 제3조(자격 및 선임방법)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라. 기 타(조항 수정 관련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3년 3월8일 의결되어 3월28일 공포된 「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」(서울특별시조례 제5464호)의 제3조제2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발의되었음.
- 현행 조례의 제3조제2항은 “② 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이외의 자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”로 규정되어 있으나,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“② 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이외의 자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.”로 규정되어 있어 단서 규정이 반영되지 않음.

<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의 제3조제2항 대비표>

현행 조례의 제3조제2항	일부개정조례안에 인용된 제3조제2항
제3조(자격 및 선임방법) ① (생략) ② 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이외의 자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. <u>다만 서울특별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</u>	제3조(자격 및 선임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이외의 자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.

- 이와 관련하여,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3조제2항을 개정할 경우에 현행 조례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12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3년 7월 4일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자 수정 제안함.

2. 주요내용

가. 결산검사위원 자격요건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
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함.

(안 제3조제2항제4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개정안 제3조제2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하며,
개정안 제3조제2항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정안
<p>제3조 ① (생 략)</p> <p>② 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이 외의 자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<u>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</u></p> <p>2. <u>정부투자기관,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</u></p> <p>3. <u>그 밖의 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</u>로서 감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	<p>제3조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이 외의 자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.</p> <p>다만,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감사위원은 전체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(삭제)</u></p> <p>1. <u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</u></p> <p>2. <u>공공기관,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</u></p> <p>3. <u>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</u>로서 감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</p> <p>4. <u>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</u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3조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<u>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</u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 ① (생 략)</p> <p>② 의회는 감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64조에 따른다.</p> <p>1. <u>감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 <p>3. <u>그 밖의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 한 경우</u></p>	<p>제5조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감사위원의 직무를 거부,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</u></p> <p>3. <u>그 밖에 감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</u></p>	<p>제5조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64조에 따른다.

1.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
2.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,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
3.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3조 ① (생 략)</p> <p>② 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이외의 자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</u> 2. <u>정부투자기관,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</u> 3. <u>그 밖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감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</u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	<p>제3조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</u> 2. <u>공공기관,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</u> 3. <u>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감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</u> 4. <u>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</u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 ① (생 략)</p> <p>② 의회는 감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64조에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감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</u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 <p>3. <u>그 밖의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</u></p>	<p>제5조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감사위원의 직무를 거부,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</u> 3. <u>그 밖에 감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</u>